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 간 학점교류 운영규정</h2>	제 정 일	2023. 1. 1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의 6에 따라 대학 간 학점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교과목에 적용한다.

제 3조 (수강대상) 본 대학교 전문학사 과정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.

제 4조 (수강신청) ① 학점교류 교과목은 원격수업으로 제한한다.

② 수강신청 절차는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진행하며, 본 대학교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취소는 가능하나 변경은 불가하다.

③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은 본 대학교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.

제 5조 (운영) 매 학기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아래 각 호를 정하여 시행한다.

1. 개설 교과목
2. 대학별 배정 인원
3. 학사일정 : 수강신청, 성적평가 등

제 6조 (이수학점) ①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4학점 이내로 한다. 단, 해외대학 학점교류는 제외한다.

②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/F로 평가한다.

제 7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대학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